- **지문 톺아보기**

#01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는 지문은 난이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며 접근해야 할 걸, 지문이 유도해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문은 그렇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지문에 반응하도록 유도를 한 평가원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개념은 항상 빡세게 읽읍시다. 이해가 되면 좋고, 안되면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팩트만 짚읍시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한 **기준이 뭐죠? 불명확해요.** 법은 수학처럼 매우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개념이 형성됩니다. **분명 이 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후술해 줄 겁니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그렇대요.

우리의 상식으론 점유와 소유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선 법률적으로 이를 나누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그저 정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점유와 소유의 정의를 비교하며 차이점을 명확히 잡읍시다.** 그게 평가원 법지문이 요구하는 우리의 독해 태도예요.

사용/수익/처분

뭐 별 다른 말이 더 안 붙죠? 약간 포괄적으로 서술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때는 주관을 개입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팩트만 잡읍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갑자기?

아니.. 비슷해 보이는 개념을 다르게 정의했으니 당연히 다르겠지만, 너무 갑자기 논리를 전개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친절합니다.***

왜 후술할까요?

그렇죠. 할 말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선 기준에 대해서 후술하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 예외상황도 있겠죠. 이렇게 미리 생각해 놓고 지문을 읽으면 나중에 이 내용이 등장할 때 훨씬 익숙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게 낯선 지문을 대하는 태도예요.

어려웠습니다. **생소한 개념이 나왔고 독자가 스스로 추론을 해야하는 문장으로 마무리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단어들 중에 생판 처음 들은 게 있었나요? 아는 단어를 법률적인 면에서 재정의 했을 뿐,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게 서술한 것은 없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같이 읽으니 오히려 쉬워보여요. **지문의 난이도를 빠르게 눈치 채고 그에 따라 본인의 독해 속도를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문은 읽는 데 8 분이 걸려도 괜찮아요. 실제로 지문이 어려울 뿐이지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평가원도 웬만하면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출제 해요. 특히나 수능은 더욱 그렇습니다.

#02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직접점유'. 이항대립을 반응하게 하는 접두사를 보면 반드시 그 쌍을 떠올려야 합니다.

→ '간접점유' ; 저라면 간접점유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잠깐 체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직접점유에서 핵심은 무엇이죠? 뭐가 됐든 일단 **물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지배'의 의미가 따로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받아들이긴 하되,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뭐, 필요하면 더 설명해주겠죠. 설명 안 해주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의미가 맞는 겁니다. 평가원이 그 정도는 설계를 하죠.

때로는 상식적인 판단을 근거로 본인을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빌려주는 사람도 권리가 있겠죠. 여러분, 이에 비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직접**점유'와 대립되는 개념이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네, '**간접**점유'요.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누가 내 물건을 빌려 쓰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한 권리입니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당연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죠?

한 문장 한 문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의 직관과 부합하는 문장은 쓱쓱 넘기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소유자를 '공시'? 대충 무슨 말인지는 감이 오지만,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요.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면 서술해주겠죠?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아하! 누가, 어떤 권리! 뭘 알려주는지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된대요.

여기서 이항대립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산**입니다.

동산의 의미를 유추해보면 '움직이는 재**산**' 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 '**부**동산'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 건물, 땅 같은 게 있겠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동산'인 겁니다. 이 생각을 떠올리고 지문 밑을 훑어보아서 부동산을 찾아봐도 되고, 그저 생각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지문 이해도는 훨씬 좋아질 겁니다.(물론 이게 결정적인 독해 key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시험장에서 했고, 이 지문은 다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입니다.

대부분이란 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율이 높기에 주류의 무언가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필연적으로 '**예외**'와 짝지어집니다. '대부분의 동산'이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면, '예외에 해당하는 동산'은? 나중에 알려줄 것 같습니다. **법 지문 특성상 PE구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문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눈치를 기릅시다.

[02:01]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굳이 말한다는 건 이게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정보란 거겠죠?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시는 '본인의 물건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따라서 본인의 것을 쓰든 빌려 쓰든 물리적으로 지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고합시다.

이런 생각을 시험장에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다 한다면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반응할 수 있었나, 이걸 최대한 보여줘야 시험장에서 일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완전히 생소한 단어가 있었나요? 한 문장씩 짚어보니 어때요? 난이도가 확실히 내려가지 않나요? 차분히 독해하세요. 차분히. 독해의 가장 기본은 한 문장씩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항대립이 눈에 띄네요. 클래식합니다.

#03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뭐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대요.

이런 형식의 문장 구성에 주의해야 해요. 간단한 구성이지만, 하나라도 놓치면 그 뒤의 내용이 이해가 전혀 안 갈 겁니다. 사소한 정보라는 인식 때문에, 윗 문단을 다시 돌아봐도 이 문장은 찾지 못 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모여 어떤 효과를 발현시키는지, 신경써서 봅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당연한 말이죠?

동산이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된다는 말은 2문단에 있었고. 당연히 이것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가 인도됨으로써 공시되겠죠. **힘 안들이고 받아들입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아 이거 어려워요. 그렇다면 직접점유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이항대립을 위주로 구조를 잘 파악하며 정보를 착실히 처리해왔는데, 갑자기 직접점유를 건너뛰고 간접점유를 설명하니 당황스러워요.

정확히, 왜 당황스러웠던 걸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P←→E 구조에 익숙했습니다. '원래는 이런데, 예외가 있다' 하는 식의 선후관계에 익숙한데, ***직접****이라는 단어는 원래와 이미지가 부합하다보니 당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별거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팩트만 집으세요.**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 이런 건 시험장에서 놓치기 쉬워요. 조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는 '점유 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 글의 구조 소개!

글의 구조를 알려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흘려 읽지 말고 빡세게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가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이 구를 신경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신경 안 쓸 땐 당연히 이미 앞의 원론적인 내용이 빠삭하게 이해가 가능할 때이고 (20.11 베이즈 주의), 신경 써야 할 땐 이런 지문 같이 빡셀 때이죠. 어떻게든 앞의 설명과 유기적으로 대응시키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A는 양도인, B는 양수인. 하지만 물건을 바로 주진 않는대요. 권리만 먼저 주는 것! 그럼 이때부턴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이처럼 양도인이 직점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무엇에 대한 양도인? 소유권!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점유 개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권리는 줬는데 물건은 안 준 상태.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새로운 예시가 **한편**과 함께 소개됩니다. 앞의 예시와 어떤 게 다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무엇이 같은지. 무엇이 다른지. 실전에서 온전히 이해는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팩트는 정확히 짚어낼 줄 알아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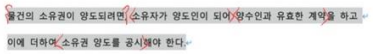

실전에서 저는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의 선후관계가 위와 같이 거꾸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여 문장 위에 표시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히 표시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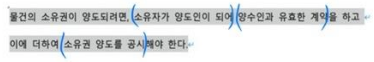

직접점유를 할 때 소유권 이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다가 아예 집을 사버리면, 직접점유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내용을 넣으면 물어볼 포인트가 적어 선지를 만들 때 어거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뺀 것 같습니다.

(단순 추측일 뿐이니 믿지는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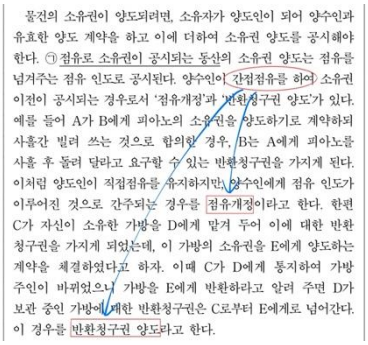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거시적인 구조가 보인다면 화살표로 간단하게나마 표시합시다. 위의 사진은 제가 실제로 실전에서 하는 반응입니다. 글의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파란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흘려 읽는 문장과 빡세게 읽는 문장을 능동적으로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흘려 읽는 문장은 동어 반복, 혹은 쉽게 예측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빡세게 읽는 문장은 문장 구조 자체가 복잡하거나, 글의 구조를 암시하는 문장일 경우 등이 있습니다.

뭐가 같죠? 물건의 직접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누가 누구에게 소유권을 주는지가 다릅니다. 저는 제 3자의 개입 여부로 볼래요.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건 이해가 잘 되죠? 받아 들입시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그렇군요.	

아 진짜 해설 쓰면서 질린다는 느낌은 처음이네요. 뭔 정보량이 끝이 없어요. 대부분의 평가원 지문은 정보의 밀도가 문단 단위로 변동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파악한다면, 대부분의 장지문을 잘 독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은 아니에요.

흐름을 놓치면 안됩니다. 본인의 독해 능력이 100 이라 할 때 80 은 이해에 쏟고 20 은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써야 합니다. 점유인도로 소유권이 공시되는데 양수인이 간접점유할 때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대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맥을 못 잡는 것 같으면 문단이 끝날 때마다 뭘 읽었나 돌이켜 보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04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원칙과 예외. 이항대립 기반의 거시 구조인 PE 구조가 다시 나옵니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예외적 상황에선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 좀 풀어쓰자면 '니가 충분히 거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그걸 인정해 줄게. 너 가져.'라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낯선 단어. 우리 늘 그랬듯이 단어를 뜯어 봅시다.
'**선**한 **의**도로 **취득**' 양수인은 거래 안전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선의**가 보여지면 거래를 인정한다는 거네요.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원래 소유자는 좀 불쌍하네요.
솔직히 시험장에서 이걸 봤을 때 소유자가 너무 불쌍해서 이게 법인가 싶었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뭘 잘못 읽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낯설고 온전히 이해가 안간다면,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팩트만 짚어야 합니다.**

단어를 뜯어서 의미를 유추하는 건 시험장에서 해도 좋은 팁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안되면 해당 개념을 매우 낯설게 느끼게 됩니다.

앞 문단들에 비해 그렇게 이해가 어렵진 않아요.

PE 구조에 반응했다면 충분합니다.

#05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 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건 아니다! 이때는 우리의 불쌍한 원래 소유자가 존중받겠군요....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관리하는 건 제외**된다는 말이네요.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답니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태를 잘 정리해 주네요. 그럼 4문단의 상황은 거래 안전이 권리 보호보다 중요시 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난이도가 낮은 문단입니다. 이 또한 어렵지 않으나, PE 에서 또 PE 가 있습니다. 여기서 흐름을 놓치는 분도 어쩌면 있겠네요.

앞 문단을 제대로 해결했다면 여기서 한 숨 돌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난도와 밀도가 낮은 문단이 글 중간에 있어야 체력적으로 분배가 되는데 마지막에야 이러면 지문 체감 난이도 자체엔 큰 영향을 주진 못하겠네요.

- **전체적인 지문 정리**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가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점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 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지문은 좀 특이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게 미시적으로는 이항대립, 거시적으로는 PE 밖에 없었고 사실 이 둘도 일맥상통하는 구조입니다. 뭔가 엄청난 논리관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지문 자체가 불친절해서 오는 난이도 상승이 큽니다. 구조를 파악해 보면 매우 간단하면서 명료한 구조입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보았는가가 여러분의 이해도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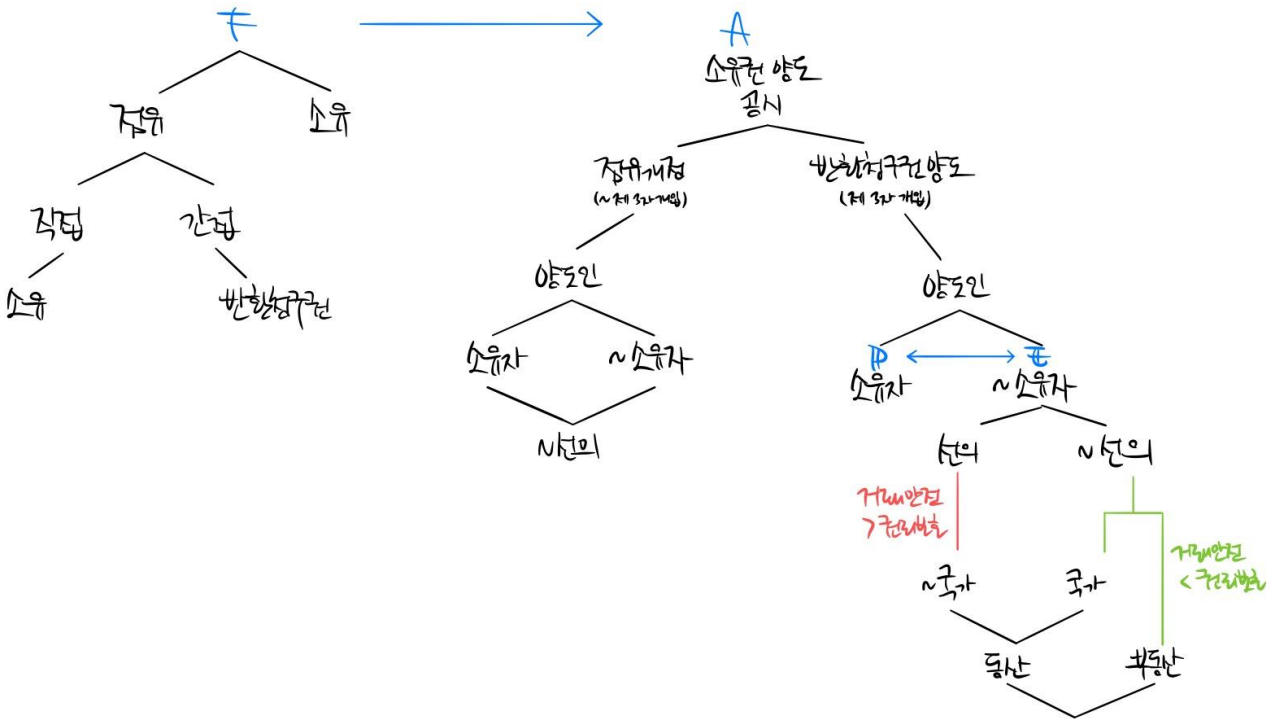

엄밀하게 따지면 일부는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념 간의 논증관계들도 생략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구조를 그림의 목적은 흐름을 파악했는가입니다. 미시적인 논증관계를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개념들 간의 관계와 배치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세요. 구조도는 도구일 뿐입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구조에 집중했는가에 따라 구조도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이를 파악하지 않고 지문을 잘 독해했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파악을 했을 겁니다. 원래 그읽그풀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따로 의식을 안해도 구조가 파악되는 상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그읽그풀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본인이 정리가 안되는 느낌이 들면 평가원이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글의 흐름 및 구조를 지문 내용에 맞춰서 조합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지문을 읽으면서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 반응하는 태도는 독해 속도와 이해도를 높여줍니다.